|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 《중대 세수 위법사건 관리감독 잠행방법》에 관한** **통지**국세발[2010]103호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중앙 직속 중점 개발도시, 지방 세무국: 《중대 세수 위법사건관리감독 잠행방법》을 배포하는 바, 이에 따라 집행하길 바란다. 집행 중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국가 세무총국으로 보고 바란다. (검사국)첨부: 《중대 세수 위법사건관리감독 잠행방법》 관련 세무 문건 양식국가세무총국2010년 11월 1일**중대 세수 위법사건 관리감독 잠행방법****제1조** 중대 세수 위법사건관리감독을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 관리 방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제2조** 상급 세무국은 세수 위법사건의 성질, 관련 사건 액수, 복잡성 정도, 조사 난이도 및 사회영향 등의 상황에 근거하여 관할 구역 내 발생한 중대 세수위법 안건을 관리감독 할 수 있다.여러 지역의 경계를 넘거나 사건이 특별히 복잡한 중대한 세수 위법사건, 본급 세무총국의 조사처리에 난항을 겪는 등의 경우에는 상급 세무국 관리감독 기구에 보고할 수 있으며 또한 구체적인 조사처리 방안 및 관련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중대 세수 위법사건의 구체적인 관리감독 사항은 조사국에 의하여 실시한다.**제3조** 국가세무총국이 관리감독하는 중대한 세수 위법사건은 아래를 포함한다.(1) 국무원 등 상급 기관 및 상급 지도자가 심사 지도한 사건(2) 국가세무총국이 영도하여 심사 지도한 사건(3) 전국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4) 세수 위법 액수가 특별히 크거나 사건이 특별히 엄중한 사건(5) 국가 세무총국이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기타 사건.성, 자치구, 직할시 및 중앙직속 중점 개발도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이 관리감독하는 중대 세수위법사건의 범위와 표준은 본 급 국가세무총국, 지방세무국에 의하여 현지 실제 상황에 따라 각각 확정한다.**제4조**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중앙직속 중점 개발도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하는 범위, 표준, 시한에 의거 국가세무총국에 세수위법 안건을 보고하고 국가세무총국은 사안의 복잡한 정도와 사건 업무 수요에 따라 사건의 관리감독을 확정한다. 성 이하 중대 세수 위법사건에 대한 보고의 범위와 표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중앙직속 중대개발 도시 국가세무총국, 지방세무국에 의하여 현지 실제 상황에 따라 각각 확정한다.**제5조** 관리감독이 필요한 중대 세수 위법사건에 대하여 관리감독 세무국(이하 관리감독 기관)이 속한 조사국이 《중대 세수 위법사건 관리감독 입항심사표》를 작성하고 처리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출한다. 처리하고자 하는 의견은 사건을 위임받은 세무국(이하 위임 기관) 및 소속 조사국, 위임 시한 및 업무 요구 등이 포함된다. 관리감독 기관은 심사 비준을 이끌고 또는 관리감독 기관이 소속 조사국 국장 심사 비준 권한을 준 후 위임기관에 《중대세수 위법사건관리감독 서한》을 발송하여 위임기관에 정확한 기한 내에 증거와 사실 조사를 요구하며 세무 처리, 처벌 결정을 내린다. 여러 지역의 세무기관의 공동조사가 필요한 관리감독 사건은 관리감독 기관이 반드시 주관기관, 협조기관 또는 관할 직책으로 중점 사건과 관련된 조사업무를 확정한다. 협조기관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주관기관의 관리감독 사건을 조사하는 것에 협조해야 하며 즉시 관련 증거자료를 조사하고 제공해야 한다. 주관기관이 요청하여 조사하여 증명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기관은 반드시 즉시 피드백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하며, 형식적이거나 업무가 태만해서는 안된다.관리감독 사건은 동시에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관할의 세수사항과 관련되어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은 각각 직책에 따라 조사하며 상호 관련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연합하여 사건을 처리하며 각각 세무 처리와 처벌 결정을 할 수 있다.**제6조** 관리감독 사건은 관리감독 기관의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위임기관은 독단적으로 하급 세무 기관이나 기타 기관에 조사를 맡길 수 없다. 관리감독 사건에 변화가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 관리감독 기관은 관리감독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임기관에 《중대 세수 위법사건 철수 관리감독 서한》을 발송한다.**제7조** 위임기관은 반드시 관리감독 기관의 《중대 세수 위법사건 관리감독 서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7업무일 내에 《세무조사 업무규정》에 따라 규정을 입안하고, 10 업무일 내에 구체적인 조사 방안을 제정하며 검사 진행을 조직한다.위임기관의 구체적인 조사 방안은 반드시 관리감독 기관에 보고되어 비안해야 한다. 관리감독 기관이 위임기관에 요구하여 검사를 실시하기 전 구체적인 조사방안을 보고해야 하며 위임기관은 요구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또한 관리감독 기관의 동의를 거친 후 검사를 실시한다.관리감독 기관은 관리감독 전 위임기관이 이미 입안했다면 위임기관은 검사를 멈추지 말고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구체적인 조사방식과 관련 상황은 관리감독 기관에 보고되어야 한다. 관리감독 기관이 구체적 조사 방안에 대하여 조정을 요구할 경우 위임기관은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 **제8조** 위임기관은 반드시 《중대세수 위법사건관리감독 서한》에 따라 《중대 세수 위법사건상황 보고표》를 작성해야 하며, 매 30일마다 관리감독 기관에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중대 세수 위법사건 관리감독 서한》에 보고 시한이 확정된 경우 확정 시한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사건 처리에 중대한 진전이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즉시 보고 해야 한다. 사건 처리에 진전이 없거나 느리게 진행될 경우 반드시 그 원인을 설명해야 하며 다음 단계 조사 업무 배정을 명확하게 제출해야 한다.《세무조사 업무규정》 제44조 규정의 검사상황 중지 또는 제70조에서 규정하는 집행 중지 상황에 대해 위임기관은 반드시 관리감독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검사중지 또는 집행중지할 수 있다. 중지기간은 《중대 세수 위법사건상황 보고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검사 중지 또는 집행 중시 상황이 완료되면 위임기관은 반드시 즉시 검사 또는 집행을 회복하여야 하며 앞 조 규정에 따라 《중대 세수위법사건상황 보고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제9조** 관리감독 기관은 반드시 관리감독 사건 조사에 대하여 지도하고 협조해야 한다. 업무수요에 근거하여 사건 발생 지역에 인원을 파견하여 검사독촉 및 사건처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수시로 사건 처리 진행상황이나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다. 관리감독기관 조사국은 반드시 관리감독 사건의 주요 책임부문 및 책임자를 확정해야 한다. 주요 책임부문은 반드시 즉시 사건 조사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하며 위임기관 사건 조사 진도에 따라 결과를 처리하고 검사 상황을 독촉하여 조사국 책임자에게 사건 처리 진행 상황 관리감독을 보고한다. 사건이 중대하거나 상급기관, 상급 책임자가 심사 처리한 중요 사건은 반드시 즉시 관리감독 기관 책임자에게 조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제10조** 위임기관은 관리감독 사건을 관련 지역 동급 세무기관에 《세수 위법사건협조 조사 서한》을 발송하여 구체적인 조사협조 요구와 회신시한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지역 동급 세무기관은 반드시 즉시 조사협조 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명확한 조사협조 결론 및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한 경우 위임기관은 관리감독 기관의 조직 조사협조를 서면으로 지시 요청할 수 있다.**제11조** 위임기관 조사국은 반드시 《세무조사 업무규정》의 관련규정을 엄격하게 지켜 관리감독 사건에 대하여 검사하고 심사하며 위임기관에게 집체 심사지시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위임기관 조사국은 반드시 인증된 심사결과에 따라 《중대 세수 위법사건 처리의견 보고》를 작성하여 위임기관 책임자의 심사 비준을 거친 후 관리감독 기관에 보고한다.사건조사 및 관리감독 중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기타 규범성 문건에 이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위임기관 조사국은 반드시 동급 법규, 세정, 징수관리, 감찰 등 관련부문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관련부문이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규정에 따라 상급 세무기관에 지시를 요청하거나 유권 해석할 수 있는 기타 기관에 자문해야 한다.**제12조** 《중대 세수 위법사건처리 의견보고》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사건 기본상황(2) 검사시한 및 범위(3) 검사방법과 조치(4) 검사인원이 밝혀낸 사실과 관련 증거 자료(5) 관련부문 및 당사자의 의견(6) 인증 심사한 사실과 관련 증거 자료(7) 세무처리, 처벌의견 및 근거(8) 기타 관련사항 설명.관리감독 사건의 성질 규정 처리는 관련 규정이 작용하는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첨부로 증거 설명을 만들어야 하며 증거의 목록, 명칭, 내용, 증명 대상 등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입해야 한다.**제13조** 위임기관의 《중대 세수 위법사건 처리 의견보고》에 대하여 관리감독 기관은 반드시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심사해야 한다. 만약 본 방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있다면 심사 기한은 적당하게 연장된다. 관리감독 기관이 위임가관에 대하여 제출한 성질 규정 처리 의견에 이의 표시가 없을 경우 위임기관은 《세무처리 결정서》, 《세무행정처벌 결정서》, 《세무조사 결론》, 《세무행정처벌하지 않은 결정서》를 법에 의거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발송하여 집행한다.관리감독 기관이 심사하여 위임기관의 《중대 세수 위법사건 처리 의견보고》가 인정한 사건에 대하여 사실이 부정확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며 법에서 정한 순서를 위반하거나 세무 처리, 처벌 의견의 근거에 착오가 있다고 여길 경우 위임기관에 상황을 설명하거나 보충 조사를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 사건 관리감독 중 범죄에 연루된 세수 위법행위에 대해 위임기관은 《범죄 연루 사건이송서》를 작성하여 규정된 순서와 권한에 의거 비준한 후 법에 의거하여 사법기관에 이송한다. 사법기관에 이송한 사건에 대해 위임기관은 반드시 수시로 사법 처리 진행 상황을 주시하여 관리감독 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제15조** 위임기관은 반드시 90일 내에 관리감독 사건 사실 조사하여 증명해야 하며 법에 의거 세무처리,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관리감독 기관이 조사 기한을 확정했을 경우 위임기관은 반드시 확정된 기한 내에 조사를 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시간에 맞춰 조사를 못할 경우 반드시 조사 기한이 끝나기 10일 내 관리감독 기관에 조사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조사 기한 연장 및 이유를 제출하고 비준을 득한 후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제16조** 위임기관이 정한 기한을 초과하고도 《중대 세수 위법사건상황 보고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또는 관리감독 사건을 조사하지 않거나, 규정된 연기조사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리감독 기관은 반드시 위임기관에 《중대 세수 위법사건재촉 서한》을 발송하여 독촉해야 하며 명령하여 상황이나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위임기관이 관리감독 사건 조사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우 관리감독 기관은 위임기관 분관 조사의 세무국 책임자 및 조사국 국장을 소환하여 보고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 기관은 직접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을 조직할 수 있다.**제17조** 관리감독 사건에 아래 상황 중 하나일 경우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1) 세수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세무처리 결정서》, 《세무행정 처벌 결정서》서를 작성하고, 세금, 체납금, 벌금 등 세수금액이 추징되어 국고로 환수되거나 납세인 또는 기타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 행정처벌 이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2) 세수 위법 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세무 조사 결론》 또는 《세무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결정서》를 작성하거나 납세인 또는 기타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 행정처벌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3) 납세인 또는 기타 당사자가 세무기관 처리, 처벌결정이나 강제 집행조치에 대하여 행정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 이의결정 또는 인민법원 판결을 받아 심사결정에 효력이 발생하거나 집행이 완료 된 경우(4) 《세무 조사 업무 규정》의 제45조에서 규정한 검사상황 종결에 부합되는 경우(5) 《세무조사 업무 규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집행상황 종결에 부합되는 경우(6)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가 세무총국이 규정하는 기타 상황인 경우.세무기관은 법정직권에 의거하여, 세수 위법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사하여 증명할 수 없거나 그 범죄에 연루되어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된 경우 사법상황 종결을 상황종료로 간주한다.**제18조** 위임기관은 반드시 사건 관리감독 종료일로부터 10 업무일 내에 관리감독 기관에 《중대 세수 위법사건종결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중대 세수 위법사건종결 보고》는 반드시 사건 출처, 사건 조사처리 상황, 세무처리, 처벌 결정내용, 사건 집행상황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관리감독 기관은 《세무처리 결정서》, 《세무행정 처벌 결정서》, 《세무조사 결론》, 《세무 행정 처벌하지 않는 결정서》, 《집행보고》, 세금, 체납금, 벌금 등 세수금액 입고증빙 및 사건종결 조사, 종결 집행 비준심사 문건 증 자료의 복사본 첨부를 요구하여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제19조** 관리감독 사건 조사처리 실행업무 책임제. 위임기관은 주로 영도 책임을 담당한다. 위임기관 분관 조사한 영도는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한다. 위임기관 조사국 국장은 집행 책임을 부담한다. 조사국 분관 사건의 영도와 구체 위임 부문 책임자 및 위임인원은 각자 나뉘어진 직책으로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관리감독 사건의 중요한 단서, 증거가 즉각 수집되지 않거나 고의로 사건을 감추거나, 전이, 은닉, 증거훼손, 또는 업무 태만, 사건 내막 누설로 인하여 관련 증거의 이동, 은닉, 훼손 또는 관련 재산의 이전, 은닉, 또는 기타 사리사욕으로 폐단이 발생하거나 배임, 직권 남용 행위가 있을 경우, 반드시 기율 책임을 부담하여 법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범죄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20조** 위임기관 및 위임인원과 협조기관, 협조인원이 관리감독 사건 조사처리 중, 그 성적이 출중한 경우 표창한다. 위임, 협조가 부족할 경우 통보하여 비판한다.**제21조** 본 방법의 관련 세무문건 양식은 국가세무총국이 제정한다.**제22조** 본 방법은 2011년 1월 1일부로 집행된다. 2001년 7월 30일 인쇄 발표된 《국가세무총국의 중대 세수 위법사건 관리감독 제도 실행에 관한 통지》 (국세발[2001]87호)는 동시에 폐지된다.첨부: 《중대 세수 위법사건관리감독 잠행방법》 관련 세무문건 양식 목록표<http://www.chinatax.gov.cn/n8136506/n8136593/n8137537/n8138502/n9981925.files/n9981924.doc> |  | **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重大****税收违法案件督办管理****暂行办法》的通知**国税发[2010]103号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　　现将《重大税收违法案件督办管理暂行办法》印发给你们，请认真遵照执行。执行中如有问题，请及时报告国家税务总局（稽查局）。　　　　附件：《重大税收违法案件督办管理暂行办法》相关税务文书式样　 国家税务总局　　 二○一○年十一月一日**重大税收违法案件督办管理暂行办法**　　　　**第一条** 为了规范重大税收违法案件督办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有关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上级税务局可以根据税收违法案件性质、涉案数额、复杂程度、查处难度以及社会影响等情况，督办管辖区域内发生的重大税收违法案件。　　对跨越多个地区且案情特别复杂的重大税收违法案件，本级税务局查处确有困难的，可以报请上级税务局督办，并提出具体查处方案及相关建议。　　重大税收违法案件具体督办事项由稽查局实施。　　**第三条** 国家税务总局督办的重大税收违法案件主要包括：　　（一）国务院等上级机关、上级领导批办的案件；　　（二）国家税务总局领导批办的案件；　　（三）在全国或者省、自治区、直辖市范围内有重大影响的案件；　　（四）税收违法数额特别巨大、情节特别严重的案件；　　（五）国家税务总局认为需要督办的其他案件。　　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督办重大税收违法案件的范围和标准，由本级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根据本地实际情况分别确定。　　**第四条** 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依照国家税务总局规定的范围、标准、时限向国家税务总局报告税收违法案件，国家税务总局根据案情复杂程度和查处工作需要确定督办案件。　　省以下重大税收违法案件报告的范围和标准，由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根据本地实际情况分别确定。　　**第五条** 对需要督办的重大税收违法案件，督办税务局（以下简称督办机关）所属稽查局填写《重大税收违法案件督办立项审批表》，提出拟办意见。拟办意见主要包括承办案件的税务局（以下简称承办机关）及所属稽查局、承办时限和工作要求等，经督办机关领导审批或者督办机关授权所属稽查局局长审批后，向承办机关发出《重大税收违法案件督办函》，要求承办机关在确定的期限内查证事实，并作出税务处理、处罚决定。　　需要多个地区税务机关共同查处的督办案件，督办机关应当明确主办机关和协办机关，或者按照管辖职责确定涉案重点事项查处工作任务。协办机关应当积极协助主办机关查处督办案件，及时查证并提供相关证据材料。对主办机关请求协助查证的事项，协办机关应当及时准确反馈情况，不得敷衍塞责或者懈怠应付。　　督办案件同时涉及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管辖的税收事项，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分别依照职责查处，并相互通报相关情况；必要时可以联合办案，分别作出税务处理、处罚决定。　　**第六条** 督办案件未经督办机关批准，承办机关不得擅自转给下级税务机关或者其他机关查处。　　对因督办案件情况发生变化，不需要继续督办的，督办机关可以撤销督办，并向承办机关发出《重大税收违法案件撤销督办函》。　　**第七条** 承办机关应当在接到督办机关《重大税收违法案件督办函》后7个工作日内按照《税务稽查工作规程》规定立案，在10个工作日内制订具体查处方案，并组织实施检查。　　承办机关具体查处方案应当报送督办机关备案；督办机关要求承办机关在实施检查前报告具体查处方案的，承办机关应当按照要求报告，经督办机关同意后实施检查。　　督办机关督办前承办机关已经立案的，承办机关不停止实施检查，但应当将具体查处方案及相关情况报告督办机关；督办机关要求调整具体查处方案的，承办机关应当调整。　　**第八条** 承办机关应当按照《重大税收违法案件督办函》要求填写《重大税收违法案件情况报告表》，每30日向督办机关报告一次案件查处进展情况；《重大税收违法案件督办函》有确定报告时限的，按照确定时限报告；案件查处有重大进展或者遇到紧急情形的，应当及时报告；案件查处没有进展或者进展缓慢的，应当说明原因，并明确提出下一步查处工作安排。　　对有《税务稽查工作规程》第四十四条规定的中止检查情形或者第七十条规定的中止执行情形的，承办机关应当报请督办机关批准后中止检查或者中止执行。中止期间可以暂不填报《重大税收违法案件情况报告表》；中止检查或者中止执行情形消失后，承办机关应当及时恢复检查或者执行，并依照前款规定填报《重大税收违法案件情况报告表》。　　**第九条** 督办机关应当指导、协调督办案件查处，可以根据工作需要派员前往案发地区督促检查或者参与办案，随时了解案件查处进展情况以及存在问题。　　督办机关稽查局应当确定督办案件的主要责任部门和责任人员。主要责任部门应当及时跟踪监控案件查处过程，根据承办机关案件查处进度、处理结果和督促检查情况，向稽查局领导报告督办案件查处进展情况；案情重大或者上级机关、上级领导批办的重要案件，应当及时向督办机关领导报告查处情况。　　**第十条** 承办机关可以就督办案件向相关地区同级税务机关发出《税收违法案件协查函》，提出具体协查要求和回复时限，相关地区同级税务机关应当及时回复协查结果，提供明确的协查结论和相关证据资料。案情重大复杂的，承办机关可以报请督办机关组织协查。　　**第十一条** 承办机关稽查局应当严格依照《税务稽查工作规程》相关规定对督办案件实施检查和审理，并报请承办机关集体审理。承办机关稽查局应当根据审理认定的结果，拟制《重大税收违法案件拟处理意见报告》，经承办机关领导审核后报送督办机关。　　在查处督办案件中，遇有法律、行政法规、规章或者其他规范性文件的疑义问题，承办机关稽查局应当征询同级法规、税政、征管、监察等相关部门意见；相关部门无法确定的，应当依照规定请示上级税务机关或者咨询有权解释的其他机关。　　**第十二条** 《重大税收违法案件拟处理意见报告》应当包括以下主要内容：　　（一）案件基本情况；　　（二）检查时段和范围；　　（三）检查方法和措施；　　（四）检查人员查明的事实及相关证据材料；　　（五）相关部门和当事人的意见；　　（六）审理认定的事实及相关证据材料；　　（七）拟税务处理、处罚意见及依据；　　（八）其他相关事项说明。　　对督办案件定性处理具有关键决定作用的重要证据，应当附报制作证据说明，写明证据目录、名称、内容、证明对象等事项。　　**第十三条** 对承办机关《重大税收违法案件拟处理意见报告》，督办机关应当在接到之日起15日内审查；如有本办法第十一条第三款规定情形的，审查期限可以适当延长。督办机关对承办机关提出的定性处理意见没有表示异议的，承办机关依法作出《税务处理决定书》、《税务行政处罚决定书》、《税务稽查结论》、《不予税务行政处罚决定书》，送达当事人执行。　　督办机关审查认为承办机关《重大税收违法案件拟处理意见报告》认定的案件事实不清、证据不足、违反法定程序或者拟税务处理、处罚意见依据错误的，通知承办机关说明情况或者补充检查。　　**第十四条** 对督办案件中涉嫌犯罪的税收违法行为，承办机关填制《涉嫌犯罪案件移送书》，依照规定程序和权限批准后，依法移送司法机关。对移送司法机关的案件，承办机关应当随时关注司法处理进展情况，并及时报告督办机关。　　**第十五条** 承办机关应当在90日内查证督办案件事实并依法作出税务处理、处罚决定；督办机关确定查处期限的，承办机关应当严格按照确定的期限查处；案情复杂确实无法按时查处的，应当在查处期限届满前10日内向督办机关申请延期查处，提出延长查处期限和理由，经批准后延期查处。　　**第十六条** 对承办机关超过规定期限未填报《重大税收违法案件情况报告表》，或者未查处督办案件且未按照规定提出延期查处申请的，督办机关应当向其发出《重大税收违法案件催办函》进行催办，并责令说明情况和理由。　　承办机关对督办案件查处不力的，督办机关可以召集承办机关分管稽查的税务局领导或者稽查局局长汇报；必要时督办机关可以直接组织查处。　　**第十七条** 督办案件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认定为结案：　　（一）税收违法事实已经查证清楚，并依法作出《税务处理决定书》、《税务行政处罚决定书》，税款、滞纳金、罚款等税收款项追缴入库，纳税人或者其他当事人在法定期限内没有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　　（二）查明税收违法事实不存在或者情节轻微，依法作出《税务稽查结论》或者《不予税务行政处罚决定书》，纳税人或者其他当事人在法定期限内没有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　　（三）纳税人或者其他当事人对税务机关处理、处罚决定或者强制执行措施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行政复议决定或者人民法院判决、裁定生效并执行完毕的；　　（四）符合《税务稽查工作规程》第四十五条规定的终结检查情形的；　　（五）符合《税务稽查工作规程》第七十一条规定的终结执行情形的；　　（六）法律、行政法规或者国家税务总局规定的其他情形的。　　税务机关依照法定职权确实无法查证全部或者部分税收违法行为，但有根据认为其涉嫌犯罪并依法移送司法机关处理的，以司法程序终结为结案。　　**第十八条** 承办机关应当在督办案件结案之日起10个工作日内向督办机关报送《重大税收违法案件结案报告》。　　《重大税收违法案件结案报告》应当包括案件来源、案件查处情况、税务处理、处罚决定内容、案件执行情况等内容。督办机关要求附列《税务处理决定书》、《税务行政处罚决定书》、《税务稽查结论》、《不予税务行政处罚决定书》、《执行报告》、税款、滞纳金、罚款等税收款项入库凭证以及案件终结检查、终结执行审批文书等资料复印件的，应当附列。　　**第十九条** 查处督办案件实行工作责任制。承办机关主要领导承担领导责任；承办机关分管稽查的领导承担监管责任；承办机关稽查局局长承担执行责任；稽查局分管案件的领导和具体承办部门负责人以及承办人员按照各自分工职责承担相应的责任。　　对督办案件重要线索、证据不及时调查收集，或者故意隐瞒案情，转移、藏匿、毁灭证据，或者因工作懈怠、泄露案情致使相关证据被转移、藏匿、毁灭，或者相关财产被转移、藏匿，或者有其他徇私舞弊、玩忽职守、滥用职权行为，应当承担纪律责任的，依法给予行政处分；涉嫌犯罪的，应当依法移送司法机关处理。　　**第二十条** 承办机关及承办人员和协办机关及协办人员在查处督办案件中成绩突出的，可以给予表彰；承办、协办不力的，给予通报批评。　　**第二十一条** 本办法相关税务文书式样由国家税务总局制定。　　**第二十二条** 本办法从2011年1月1日起执行。2001年7月30日印发的《国家税务总局关于实行重大税收违法案件督办制度的通知》（国税发[2001]87号）同时废止。　　附件：《重大税收违法案件督办管理暂行办法》相关税务文书式样目录表 <http://www.chinatax.gov.cn/n8136506/n8136593/n8137537/n8138502/n9981925.files/n9981924.doc> |